

대전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가단21130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4. 11. 11.

판결 선고 2014. 12. 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2,178,08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4. 9.

1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86,340,470원 및 그 중 각 84,5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8. 12.부터 2014. 9. 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은 2014. 8. 12.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2014.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4. 4. 1. 접수 제190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A의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소외회사,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3. 1. 21.부터 2015. 1.

20.까지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C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각 8,4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분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피고 A이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회사는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4. 4. 7.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5. 8. 소외회사에게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4. 4. 1. 접수 제19042호로 피고 D에게 2014.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C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카렌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102,178,0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86,340,47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분 연대보증한 범위인 각 84,500,000원에 대하여 각 2014. 8. 12.부터 각 피고들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피고 A은 2014. 9. 12. 피고 B는 2014. 9. 1., 피고 C은 2014. 8. 29.)까지는 각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와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이전에 채무발생의 기초가 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는 때로부터 불과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곧바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위 각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채무자 피고 C이 앞서 본 자동차를 제외한 그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태안

별지